**‘숭실대학교 TIME 연구반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본 동아리는 <숭실대학교 TIME 연구반>이라 칭한다.

(이하 ‘숭실대학교 TIME 연구반’은 ‘본회’라 칭한다.)

**제 2조 [목적]**

본 회는 숭실대학교 내에서 TIME지를 연구, 발표함으로써 회원 및 기타 학우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꾀함은 물론 세계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회원 각자의 인격도야에 목적을 둔다.

**제 3조 [위치]**

본 회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 2장 임원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6개월이다. 개시일은 각각 1월1일과 7월 1일로 한다.

(단, 1차에 한해 연임 가능)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차기 회장은 현 회장이 지명하며, 회장 이외에 차기 임원진은 차기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본 회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 명의 회장과 부회장을 임원으로 두며, 이를 회장단이라 칭한다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. 또한 회계 및 신입생들을 위한 홍보 및 리허설을 전담한다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돕는다. 필요에 따라 한 명 이상일 수 있다.

**제 4조 [회장단 회의]**

회장단의 회의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실시한다. 회의시에는 회장단(임원진)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. 정회원은 회의 업무에 대한 건의권을 갖을 수 있어 자유로운 의사참여가 가능하다.

**제 5조 [집회]**

집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, 정회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모두 참석해야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정회원은 회비 납입과 본 회의 행사에 참석, 협조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.

②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칙과 본 회의 모든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실천 및 본 회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③ 준회원은 가입한 학기 안에 데뷔칼럼을 할 의무가 있다.

④ 회장에 지시에 따라 정회원은 1년에 한번 이상 칼럼을 할 의무가 있다.

⑤ 정회원과 준회원은 한 학기에 1/3회 이상 칼럼을 참석 할 의무가 있다.

⑥ 특별 회원은 고문의 자격을 지닌다.

**제 2조 [회원의 제명]**

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케하는 행동을 한 자는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본 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.

① 가입한 학기 내에 데뷔칼럼을 하지 않는 준회원

② 정회원과 준회원 중 회원으로써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

③ 회장의 판단 하에 총회를 거쳐 과반수를 넘은 자

**제 4장 행사**

**제 1조 [정기 행사]**

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한다.

① 신입생 환영회 및 MT

② 타 학교와의 교환칼럼

③ 창립제

④ 교내 행사 연 1회 이상 참여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회비에 관한 회칙은 별도 제정한 회칙을 따른다.

**제 6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의 종류]**

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.

**제 2조 [준회원]**

해당 학기 본 회에 가입한 자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에 해당되지 않은 자

**제 3조 [정회원]**

준회원을 거쳐 회장의 인정을 받아 데뷔칼럼을 한 자

**제 4조 [특별회원]**

정회원을 거친 졸업생

**제 5조 [회원의 관리 및 의무]**

① 정회원은 본 회의 업무에 대한 건의권을 갖는다.

② 정회원은 회비 납입과 본 회의 행사에 참석, 협조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.

③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칙과 본 회의 모든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실천 및 본 회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④ 준회원은 가입한 학기 안에 데뷔칼럼을 할 의무가 있다.

⑤ 회장에 지시에 따라 정회원은 1년에 한번 이상 칼럼을 할 의무가 있다.

⑥ 정회원과 준회원은 한 학기에 1/3회 이상 칼럼을 참석 할 의무가 있다.

⑦ 특별 회원은 고문의 자격을 지닌다.

**제 6조 [회원의 제명]**

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케하는 행동을 한 자는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본 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.

① 가입한 학기 내에 데뷔칼럼을 하지 않는 준회원

② 정회원과 준회원 중 회원으로써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

③ 회장의 판단 하에 총회를 거쳐 과반수를 넘은 자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개정]**
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회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**제 2조 [창립일]**

본 회의 창립일은 1980년 8월 15일로 한다.